

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

/안병국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안병국 의원)

가. 개정사유

-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,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-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과 권고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공지능기술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6호)
-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구체화(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호 및 6호)
- 관계인에 대한 권고 추가(안 제6조제3호~제5호)
- 협력체계 구축 추가(안 제8조)

다. 관련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1조2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종합검토 결과
 -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, 기타 다른 화재보다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.
 -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, 특히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 - 앞으로, 포항시는 조례 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, 담당부서는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